第216回國會
(臨時會)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法案審査小委員會)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0年12月22日(金)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정균환 의원 대표발의)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金洪信 의원 대표발의)
3. 國會法中改正法律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
4. 國會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5.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6. 國會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발의)
7.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용학 의원 발의)
8. 國會法中改正法律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9.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金洪信 의원 대표발의)
10.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
11.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김용학 의원 발의)
12.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審査된案件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정균환 의원 대표발의) ····· 1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金洪信 의원 대표발의) ····· 1
3. 國會法中改正法律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 ····· 1
4. 國會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 1
5.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 2
6. 國會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발의) ····· 2
7.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용학 의원 발의) ····· 2
8. 國會法中改正法律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 2
9.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金洪信 의원 대표발의) ····· 2
10.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 ····· 2
11.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김용학 의원 발의) ····· 2
12.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 2

(14시22분 개의)

○**小委員長 千正培** 성원이 되었으므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법 등 12건의 법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정균환 의원 대표발의)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金洪信 의원 대표발의)
3. **國會法中改正法律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
4. **國會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5.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6. **國會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발의)
7.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용학 의원 발의)
8. **國會法中改正法律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9.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金洪信 의원 대표발의)
10.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
11.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김용학 의원 발의)
12.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小委員長 千正培** 그러면 그 12건의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12건의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이니까 발언순서를 엄격하게 정하기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순서없이 질의 응답을 겸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武星 委員**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하지요. 정 수석, 뭐가 제일 이견이 없는 거예요?

○**小委員長 千正培** 현실적으로 여야 간에 정치적 쟁점이 없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金洪信 의원이 발의한 의원수당 일할계산 그 문제는 어떠신가요? 그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해도 좋지요.

○**金武星 委員** 그것부터 질의를 하지요. 이것은 지난번에 신문에 나고 金洪信 의원을 비롯한 일부 초선의원들이 월급 첫 달 치 받은 것을 반납하고 고아원에 갖다주자는 바로 그 문제이지요?

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鄭 수석, 뭐가 문제예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원이 구성할 때에 5월29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5월29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헌법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원구성의 입장은 항상 5월29일, 30일, 31일 3일간 재직하고 5월달 봉급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제가 알기로는 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5월30일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예, 30일, 31일 이틀입니다.

○**金武星 委員** 그것이 29일까지 정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29일까지 정해진 것은 헌법 부칙 제3조에 보면 그 당시 헌법이 개정되고 88년도에 현행헌법이 발효가 되면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5월30일이었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것이 임기개시일이었군요? 그것이 5월30일이 되다보니까 4년 임기를 계속 채우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정상적으로 5월30일이 국회개원일이군요. 개원일보다도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이군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런데 5월30일에 임기개시하고 이틀밖에 임기가 아닌데 사실은 5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초선으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틀 재직하시고 한달 세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金武星 委員** 그러면 그것을 5월말일까지로 바꾸면 안 되나요? 헌법을 바꾸어야 되나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헌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金武星 委員** 그것이 더 쉬운 일이 아닙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金洪信 위원 하신 대로 의원수당을 일할 계산, 그러니까 지금 한달치 받는데 이틀치만 받게 30분의 2가 되든지, 31분의 2가 되든지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金武星 委員** 일할 계산하면 상충되는 것이 없습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제가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임기를 마치는 의원님들이 이틀분을 못 받으시게 됩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당연하지요. 임기가 5월29일 끝나니까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끝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러니까 우리 임기가 4년 아닙니까? 그러면 첫 시작한 달 5월30일 시작하면 5월분 세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또 마지막 임기 끝날 때는 5월29일날 끝나지만 또 5월분 세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한 번 하고 그만두는 분은 세

비를 49개월을 받아요. 그러니까 재선이 되면 그 해 두 번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재선도 언젠가는 그만두니까 4년이면 4년, 8년이면 8년 플러스 1개월의 세비를 받게 되겠지요. 언제 그만두어도 그만두니까. 그 1개월분라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4년 임기면 총계로 보면 48개월만 받으면 되지요. 뒤에는 29일 일하고 1개월분 받고 앞에는 이틀하고 1개월분 받아서 한달 일하고 2개월분 받는 꼴이 되어서 결국은 48개월 일하고 49개월분 세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金武星 委員** 그러면 鄭 수석, 이것이 국회의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에 따라 있는 보좌관, 비서들 다 해당됩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아닙니다. 국회의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차관도 그렇지 않습니다.

○**尹景湜 委員**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점은 일반공직자들은 봉급, 급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국회의원같은 경우는 명칭이 봉급이 아니잖아요? 법은 수당이라고 되어 있고 또 세비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그래서 원래 세비는 활동수당이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활동비,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는 일반공직자들의 봉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별도로 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서 따로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월급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세비라고 하는 이유가 성격은 그렇습니다.

○**委員長 千正培** 활동비도 일하는 임기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임기는 48개월인데 활동비는 49개월 주는 것은 정당하겠습니까, 활동비냐 급여냐 하는 것은 관계없이 48개월 일하고 49개월분을……

장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공무원보수규정에 장관급 보수규정으로 따로되어 있습니다. 장관을 그만 둘 때는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보름이 넘어가면 한 달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千正培** 우리 나라의 공무원 중에서 유독 국회의원만 이렇게되어 있는 것입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하루라도 속하면 그 월은 다 드리는 것으로……

○**金武星 委員** 문제는 이틀이 문제인데 그러면 일할계산하게 되면 29일 근무하고 한 달분을 못 받고 29일분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그런데 법규에 보면 물러가시는 분은 전액을 지급받고 들어오시는 분은 이틀을 일할계산 해서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이……

○**尹景湜 委員** 우리 국회의원의 세비나 활동비를 일할계산한다는 개념을 일반 공직자 봉급이랑 개념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지급을 아예 30일부터 해서 그 다음 달 29일까지 한달치 주고 그러면……

○**小委員長 千正培**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20일 받는다면 5월20일에 5월분 안 받고 6월부터……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이틀분만 받으시고 시작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결국은 돈은 마찬가지입니다.

○**李熙圭 委員** 그러니까 이틀치 때문에 한달을 받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개정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尹景湜 委員** 그런데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임기 개시할 때도 일할계산하고 임기 끝나는 달도 일할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熙圭 委員**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 역시 똑같이 일할 계산한다는 것입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반공무원의 보수도 예를 들어서 15일 이후까지 근무하고 나가는 경우는 한 달치를 다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尹景湜 委員** 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전반부분을 어떻게 하시는가가……

○**吳長燮 委員**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월급이 아닌 활동비다 했을 때는 회기를 안 잡았을 경우에 일반 시민들은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거든

요.

○**小委員長 千正培** 수당이든 활동비든 임기가 아닌 날에도 봉급 받는 셈이니까, 제 생각에는 원안 정도면 훌륭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尹景湜 委員** 어차피 국민여론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것이라면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해서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일할계산은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일관되게 일할계산을 해야지 앞에는 일할계산을 하고 뒤에는 전액을 주고, 그것은 조금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은 뒤에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개정안 효과가 별로 빛을 못 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吳長燮 委員** 이것은 회기가 아닌 일정을 의정활동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참고로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 2년 이상 근무자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는 마지막 달의 경우에 하루만 근무해도 한 달치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尹景湜 委員** 이렇게 되면 국회가 모범을 보이면서 공무원보수규정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兪成根 委員** 앞을 고쳤으면 뒤도 고쳐야지 신선한 발상이지요. 앞부분만 고치고 뒷부분은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절반은 놔두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尹景湜 委員** 개정하는데 개정의 원칙이 뭐냐 이거예요. 원칙에 입각해서 개정을 해야지……

○**小委員長 千正培** 정확하게 4년치 봉급만 받도록 하자, 그러면 임기를 시작하는 날이든 끝나는 날이든 완전 일할계산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金武星 委員** 조문을 정리해 보면 '임기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고'……

○**小委員長 千正培**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 또는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을……'에서 '을'을 '과'로 고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임기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이렇게 합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 또는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李熙圭 委員** 그것을 더 줄이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제 말씀도 같은 말입니다.

다음은 宋錫贊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서류를 요구할 때 디스켓 등도 포함시키자는 것인데 이 규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명문화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다는 것 하나 하고 또 이것을 고칠 경우에는, 명문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보안장치 같은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분야의 기술자와 얘기를 해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E-메일 들어가고 할 때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요새 무슨 보안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위원님들, 이 취지에는 찬성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생각해 보아도 지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자료를 국회의원한테 그냥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라든가 국회사무처까지 포함시켜서 몇십 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십 부로 올 때는 서류로 복사해서 오는데 그것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자적으로 온다고 하면 그 위원들한테도 E-메일로 보내면 되는 것인지 또는 디스켓으로 각각 보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디스켓으로 와서 보관한다면 지금

서류로 오는 문서보다도 그 보관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디스켓은 노후되면 더 빨리 흠이 생기는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았다는 증거 등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정부에서 등기전산화, 호적전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공문서까지도 다 전자적으로 관리하는데 국회에서 이 자료 받는 것을 관리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자문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보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소위원들이 취지는 대체로 동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입법하되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검토한 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그와 아울러 지금 전자시대로 가면서 서류의 범위에 디스켓과 디스크 등의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을 다른 법에도 다 적용되도록 해야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만 넣는 것입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국회법에 입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2번하고 4번이 같은 것입니다. 다 중복되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들어가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吳長燮 委員** 행정부와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그리고 뒤에 친절하게 국감법은 국회법의 체계에 맞추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발의자께서 정리 겸 내주신 것입니다.

○**吳長燮 委員** 이것만 아니라 일반행정부의 행정체계도 같이 가야 돼요.

○**小委員長 千正培** 지난번에 우리 소관으로 정해졌던 전자정보에 관한 법 같은 것에도 다 들어갈 것입니다.

○**金武星 委員** 그러면 고칠 때 한꺼번에 같이 고쳐야 됩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예, 행자위로 보냈으니까 우리가 그런 취지로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그리고 현재도 위원님들께서 서류를 요구하실 때 디스켓을 보내라고 하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兪成根 委員** 그러니까 개정안 7항을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예.

○**兪成根 委員**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달라고 해서 정보망에 띄워버리면 다른 이적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보안문제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兪成根 委員**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兪成根 委員** 뒷 페이지도 똑같은 원리에서 128조제5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28조제5항에 보면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의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제어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취지가 결국은 서류를 요구할 때 어떤 때는 간단하게 디스켓으로 주면 되는데 복잡하게 할 것 없이 명문화하자고 하는 것이 심플한 그 뜻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연결해서 건드리신 것 같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 문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대로 두어도 별로 불편함은 없는 것이므로 다른 행정부의 관계법이라든가 전문가가 어떻게 보완장치를 함으로써 가능한가 하는 것은 저는 자신이 없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李熙圭 委員** 그러면 나중에 기술적인 전문가들을 한번 모셔다가 의견도 들어보고 완벽하게 해놓고 법을 고쳐야지 제대로 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여기 계신 전문위원님까지도 자신이 없다고 하는 판인데 이것을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小委員長 千正培**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런 정도로 하시고……

○**金武星 委員** 이 정신은 다 찬동하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이 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다시 해봅시다.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그것은 1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 다음에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의 의무화로 金洪信 의원 발의법안입니다. 그 부분도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金宅起 委員** 예결 소위원회에서 속기하는 것을 깊이는 보지 않고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속기를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5대까지는 소위원회는 아예 속기록작성을 의무화하는 원칙이 없었지요, 맞습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예, 요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런데 15대때 중요한 의안심의가 소위원회에서 기록도 남지 않는 상태로 밀실에서 처리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16대 국회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15대에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현행법이 되었는데 현행법의 내용은 소위원회에서도 속기를 하고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소위원회 자체의결로 속기를 하지 않고 요지만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金洪信 의원의 개정안의 취지는 소위원회에서도 의무적으로 속기를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鶴松 委員** 이것이 15대 말에 개정된 것 아닙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예.

○**金鶴松 委員** 그런데 지금 金洪信 의원 발의에 따라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회의방법을 바꾸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속기사들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하고 현행대로 하면 우리 결의에 의해서 기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그렇습니다.

○**金鶴松 委員** 그러므로 그런 여지를 둘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국회가 어떤 일이든지 국회 자체의 의결로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속기를 의무화한다면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것이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이는 부분도 모두 속기록을 작성해야하는 경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냥 폐기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金武星 委員** 제69조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金鶴松 委員** 2월16일에 바뀌었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그러면 다시 제가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대 국회에서는 위원회의 속기록 작성제도가 이러합니다.

즉 위원회의 경우 속기록을 작성하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었고,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요지를 기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을, 새로 바뀐 것은 위원회는 반드시 속기를 하고 소위원회는 원칙으로 작성하되 의결이 있으면……

○**金武星 委員** 현행이 언제 바뀌었느냐는 것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법은 지난 2월에 개정됐고, 시행은 16대국회부터 하게 되어 있지요?

○**金武星 委員** 2월에 어떤 경위로 바뀌었느냐는 것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金武星 委員**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여러 번 회의하고 공청회를 해서 바꾼 것인데 시행도 제대로 안 해 보고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兪成根 委員** 제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도 되는데 거기서는 소위원회에서 오프 더 레코드하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특위에서마저 전체 국가를 생각하고 여성문제를 마일드하게 하면…… 아무래도 다른 위원회 갔을 때도 이 문제들이 깎이고 하니까 여성특위에

서는 강하게 하자는 말들이 속기록에 다 집어넣어지면 논의가 참 힘들게 되지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가장 단점은 원래 소위원회제도 자체가 속에 있는 말을 편안하게 해서 의견수합을 하자는 것인데 만약 이 개정안대로 되면 또다른 비공식 소위원회 같은 모임을 전 단계로 가져야 됩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위원님들, 이 부분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金武星 委員** 계류시키는 것입니까, 부결시키는 것입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운영위 상태로 폐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방망이를 쳐야 합니까?

○**金武星 委員** 하나하나 방망이 치지요.

○**小委員長 千正培** 의사일정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좋겠네요.

○**金鶴松 委員** 위원장님, 속기록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발의한 사람에 대한 예의일 것 같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러면 제2항으로 올라와 있는 金洪信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개정안, 소위원회 속기록작성 의무화 취지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가결하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위원장님, 거기에 취지를 잠깐 붙이시지요. 15대말 제도개선 차원에서 현행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小委員長 千正培** 그 취지는 살아있고, 주문으로서 金洪信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위원회 속기록작성 의무화 취지의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金宅起 委員**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도 날 수 있는 꽤 민감한 부분이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칙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계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金武星 委員** '15대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만든 법을 시행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바꾸려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고로 현행법을 좀더 시행해 본 이후 문제가 될 때는 다시 한다' 이렇게 해서 방망이를 쳐요.

○**小委員長 千正培** 좋습니다. 그런 취지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역시 金洪信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관해서는 의원수당의 일할 계산을 임기개시한 날뿐만 아니라 임기가 끝나는 날, 개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직을 상실한 날까지도 포함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金鶴松 委員** 거기에 입법활동비나 입법지원비에 대한 것도 일할 계산됩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그것은 별개입니다.

○**金武星 委員** 의장·부의장 당적이탈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있잖아요? 이것 민주당 공약 아닙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다음은 의장·부의장 당적이탈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沈在哲 의원이 대표발의한 3항과, 金元雄 의원이 대표발의한 5항이 있지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3항은 의장만이고 5항은 부의장까지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金武星 委員** 같이 논의합시다.

○**小委員長 千正培**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景湜 委員** 현재 여당이 국민회의 시절 때의 안 그대로입니다.

○**金武星 委員** 의장은 당적을 이탈해야 되는데 부의장까지 넣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의장의 당적이탈 취지는 중립적으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국회운영을 해달라는 뜻인데 의장이 그럴 의지가 있으면…… 부의장에게 사회를 넘기는 문제가 다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만 하더라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熙圭 委員** 제 생각에는 의장만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도 일단 의사봉을 쥐면 의장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金武星 委員** 이것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 걸려있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의장이 사회를 안 넘겨야지요.

○**小委員長 千正培**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6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현실론을 말씀드리면 워낙 각 교섭단체간에 의석 1석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의석차이는 많이 있지만 과반수 의석에 도달하느냐 마느냐 하는 등등의 문제가 겹쳐 있어서 즉시 당적을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지는 극히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7대 국회에서 시행하도록 해본다든가 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李熙圭 委員** 여기에 보면「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정당을 탈당하도록 하는 의장의 당적보유금지규정을 두도록 함」그랬어요. 그러면 당선된 지 지금 70일도 넘었습니다. 이 사안으로 얘기한다면 적용이 안 돼요.

또 부칙을 다룰 바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의장이 사회를 보지 못할 경우 부의장한테 넘기면 부의장이 소속이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소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金鶴松 委員** 위원장께서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의견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난 뒤에 밝혀 주십시오.

○**小委員長 千正培** 알겠습니다. 제가 성미가 좀 급해서 그렇습니다.

○**金鶴松 委員** 사실 의장의 당적이탈문제는 우리 국회 내에서도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당적을 이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15대 국회 때 96년11월 기록을 찾아보니까 국민회의 당시에 朴相千 의원 발의로 해서 112명이 의장당적이탈 국회법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에서도 과거에 의장의 당적이탈 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사항이고, 국민들의 뜻도 그렇고 발의한 의원들이나 제 개인의 의견도 의장은 당연히 당적을 이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沈在哲 의원과 金元雄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믹스시켜서 의장의 당적만 탈당하는 것으로 하고 부의장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金元雄 의원 발의 중에서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단서조항에 들어가서 다음에 의장되시는 분이 임기만료 90일 전에 당적을 가져서 다음 17대 국회에 출마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熙圭 委員** 민주주의를 오래 했다는 나라들, 영국의 경우는 상원은 보유할 수 있게 하고 하원은 금지하고, 반대로 미국의 경우는 하원의장은 당적보유를 허용하고 상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여섯 사람의 의견으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전체회의에 다시 한번 붙여보든지 한번 더 심도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金鶴松 委員** 어차피 소위에서 결정되더라도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金武星 委員** 미국의 하원의장은 당 의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兪成根 委員**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선진국은 당적이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같이 정치적 후진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당적을 가진 국회의장이 중립을 안 지키고 편파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은 나라일수록 당적이탈을 해야 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전통이 있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국회의장이 있는 나라는……

○**李熙圭 委員** 지금 兪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의장, 부의장 다 당적보유를 금지……

○**兪成根 委員** 그런데 역할면에서 우리는 국회의장이 부의장을 지명할 수 있는데 중요도 비중면에서 굉장히 크지요.

○**小委員長 千正培**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문제는 물론 소위원회에서 합의하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각 당의 당론 수렴절차를 거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든간에 현 의장은 당적이탈을 전제로 해서 선출된 의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의장은 당적을 가지고 당선이 되었는데 부칙에 의해서 입법적으로 현 의장의 당적박탈을 입법화하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 의장이신 본인도 그렇고 또 뽑는 국회의원들도 이분이 당적이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뽑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감한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앞으로 각 당의 당내 당론 결정절차도 거칠 필요가 있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武星 委員** 조금 전 위원장과 李熙圭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2000년1월11일 2시45분부터 3시10분까지 있었던 회의에서……

○**小委員長 千正培** 무슨 회의입니까?

○**金武星 委員** 정치개혁특위입니다.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문제에 대해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당적이탈을 주장하고 자민련은 대통령의 당적이탈을 조건으로 당적이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당적이탈을 이미 주장하고 있어요.

○**兪成根 委員** 千 위원장께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국회의장은 선출될 당시에는 당적이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兪成根 委員** 그런 점이라는 것이 千 위원장님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小委員長 千正培**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떠나서 당적이탈을 전제하지 않고 선출된 의장에 대해서 이제 와서 당적이탈을 강제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兪成根 委員** 마찬가지로 선거에 의해서 각 정당에 의한 그것도 소급적용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小委員長 千正培** 무슨 말씀이십니까?

○**兪成根 委員** 교섭단체 숫자라든가 전부 국민들한테 공개되고……

○**小委員長 千正培** 그것은 아니고……

○**兪成根 委員** 아니, 어떻게……

○**小委員長 千正培** 그 부분을 할까요?

○**兪成根 委員** 아니,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 부분은 야당위원님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좀더 각 당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이라든지 논의절차를 거쳐서 당내에서 논의하는 정도로 하시지요.

○**金宅起 委員**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볼 때 당적이 없다고 해서 꼭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 여야가 합의해서 집권당이 국회의장, 야당이 부의장 하는 그 자체 합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실지로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다 존경받는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뽑는다면 사실 의장이 당적을 갖고 안 갖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여야 정당에서 의장, 부의장에 대해서 서로 이미 의장은 집권당, 부의장은……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兪成根 委員**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선될 당시는 정파적인, 집단적인 지지에 의해서 될 수 있더라도 일단 국회의장이 되면 국회의 대표지요.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삼권분립 아닙니까?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어떤 특정한 정당의 대표가 아닙니다. 입법부의 수장이 특정정파에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면에서 지지는 어떤 특정정파의 몰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된 이상은 엄연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를 견제해야 될 수장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金宅起 委員** 그 말씀은 100% 인정을 하는데 당적을 이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립을 지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兪成根 委員**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도 악화는 안 되고 개선이 될 가능성이……

○**金宅起 委員** 또 그 사람이 90일전에 당적을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적이 있고 없고가 꼭 중립을 지킬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兪成根 委員** 90일전에 하는 것이야 기술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은 선거에 나오기 위

해서 하는 것이고……

○**金宅起 委員** 그런데 제가 원론적인 문제로 볼 때 국회 전체가 모여서 존경하는 사람을 내 놓고 뽑는 것이 오히려 더 급선무인 것이지 정당 사이에 합의해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해 놓고 당적을 이탈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兪成根 委員** 이 문제가 왜 나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의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당적이탈문제가 나오는 비극적인 논의 아닙니까?

○**尹景湜 委員**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이 두 가지 있는데 沈在哲 의원은 의장에 대해서만 7일 이내에 탈당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金元雄 의원의 안은 의장, 부의장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기만료 90일전부터는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당적을 갖지 않게 하려면 沈在哲 의원의 안처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 받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은 예외를 두는 것으로, 당적을 안 가지고 있어도 추천결격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차라리 이렇게 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당적을 안 갖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당적이탈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적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은 저는 당연히 쉽게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金 수석부총무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야간에 다 합의가 되었던 것이고 또 지금 자민련 吳 위원님도 오셨지만 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굳이 더 의논할 여지가 있는가, 또 상황이 바뀐 것도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현실적으로 국회 의석구조가 바뀌었고 의장의 당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회의를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대체로 오후 4시전에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30여분 정도로 한정을 두고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상대방 입장을 서로 확인했고 한나라당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측이나, 吳 위원님은 말씀 안 하고 계십니다마는, 적어도 민주당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金鶴松 委員** 이왕 이 문제를 심의하니까 전체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吳長燮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시고 다 들어봐야지요.

○**吳長燮 委員** 두 당이 결론 내면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李熙圭 委員** 저는 일단 좀더 심사숙고하자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오늘은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지요.

○**金鶴松 委員** 그러면 다음 소위에서 다시 회의를 하자 이 말씀입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물론이지요. 말하자면 이 문제는 이대로 우리 소위에 계류한 상태에서……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의장문제가 나온 김에 8항에 徐淸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李熙圭 委員** 8항은 3, 5항과 거의 비슷한 성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항, 5항과 8항은 각 당의 의견도 들어본 연후에 함께 논의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兪成根 委員** 이왕 모였으니까 하나하나 논의를 하지요.

○**李熙圭 委員** 거의 의장의 중립적인 의사진행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3항과 5항의 안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을 때 얘기가 되어야 순서인 것 같아요.

○**兪成根 委員**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데 그렇다면 국회법 전체가 다 연관되어 있어요.

○**李熙圭 委員** 이것이 왜냐하면 어차피 3항과 5항이라는 것이 의장의 중립적인 의사진행을 목적으로 해서 발의된 의안들이기 때문에 안의 내용은 좀 다르지만 결국 8항 역시 의장의 중립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兪成根 委員** 그런데 의장의 중립적인 진행을 원하지 않는 법으로 하자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적이탈문제는 중립성을 보장하자 안 하자의 문제는 아니고 또 다른 이론으로서 중립성의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니까 개별적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

니다.

○**金宅起 委員** 李熙圭 위원님의 말씀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金元雄 의원이 의장, 부의장도 다 당적을 이탈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부의장이 당적을 갖고 있는데 다수당 사람이 부의장으로 대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모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범위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당적이탈문제하고는 모순이군요. 당적 가진 것을 전제로 하는 법안 아닙니까?

○**尹景湜 委員** 의장만 당적보유를 안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라고 봐야지요.

○**金武星 委員** 아니, 의장이 당적을 이탈해 놓고도 중립적이지 않게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지요.

○**小委員長 千正培** 그러면 오히려 소속의원수가 적은 교섭단체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많다고 공정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장의 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尹景湜 委員** 다수결원리이니까 부의장은 다수쪽으로……

○**金宅起 委員** 그런데 사회를 보는 사람이 중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부의장이 또 사회를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당적을 갖고 있으면 중립이 불가하니까 이탈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다수당의 대표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논리가 모순되는 것이거든요.

○**小委員長 千正培** 그렇게 된다면 교섭단체 소속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부의장 선출할 때 득표순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尹景湜 委員** 그러니까 이 조항은 의장이 당적보유를 하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는 조항입니다. 의장이 당적을 이탈해서 진행한다면……

○**金武星 委員**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2인 이상의 방해로 인하여,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이 의장실에 감금되었을 때처럼 물리적 힘에 의해서 감금되었다고 할 때는 그 사항이 인정이 되면 다른 당의 부의장이 가서 사회를 보라 이 말이지요.

○**金宅起 委員**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金武星 委員** 그것은 고의적으로 회의를 기피하거나 할 경우에……

○**小委員長 千正培** 현행 법에는 의장이 자기가 못하거나 무슨 이유가 있으면 자기가 지명해서 어떤 부의장한테 하라고 직무대행권을 주든지 사회권을 위임하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의장이라는 결정주체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개정안 대로라고 그러면 의장이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한다는 것은 의장 자신이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개정안을 낸 취지는 의장이 거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 부의장이 스스로 나서서 사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장이 사회를 안 했을 때 판정의 주체는 부의장이 되는 것입니까?

○**兪成根 委員** 지난번 경우는 의장이 판정의 객관적인 주체였지요, 왜냐하면……

○**小委員長 千正培** 아니 그러니까 의장이 판정의 주체라고 그러면 현행법에도 의장이 이것 내가 못하겠으니 누구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兪成根 委員** 그것은 분명히 막으면서도 지명을 안 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 되겠지요.

○**尹景湜** 이 판정은 사후에 하는 것이지, 가령 과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강행처리가 있었을 때에 유효나 무효냐를 가지고 서로가 다르게 생각했던 것처 ○**그 평가는 추후에 하는 것이지 그 순간에 누가 합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그래도 주체가 있어야지요. 이를테면 이런 두 가지가 생길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의장은 이를테면 나는 거부할 생각이 없다 기피하지 않는다 여야간에 교섭단체끼리 더 협의해라 하고 놓고 있는 사이에 부의장은 여기에 소속의원 수가 많든 적든 부의장은 의장이 기피한다면서 자기가 사회를 하겠다고 그러면 동시에 사회권자가 두 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판단을 부의장한테 준다면……

그러면 부의장은 여기에 의해서 이 법률규정에 의해서 자기가 사회권자라고 주장하고 의장은 그

게 아니다 내가 지금 거부 기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장이라는 것이 당장 의사진행을 하는 것도 의장의 권한이지만 그 재량에 의해서는 교섭단체간에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좀더 시간을 주면서 하는 것도 의사진행의 한 방법이 아닙니까?

○**金武星 委員** 여기에 그 판정의 기준이 되어 있네요.

'이 경우 교섭단체 대표위원 1인 이상이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개의 또는 의사진행의 요구가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래서 그 판정은 어차피 부의장이 스스로 합니까? 누군가가 판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李熙圭 委員**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이 법안에 무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물론 판단의 주체도 불분명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의도적인 방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놓은 법안이 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는 '첫째 2인 이상의 방해로 인하여 본회의에 개의 또는 의사진행이 어려운 때' 이랬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 단체가 이대로 한다면 의원 수가 많은 당에서 일부러 두 사람 이상이 가서 붙잡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원내 제1당이 가서 의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당 부의장이 오겠네요.

○**吳長燮 委員** 제가 한 마디 합시다.

교섭단체에 연관된 국회법안은 두 당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섭단체 관련법안에 한해서는 심의 분석 검토는 비교섭단체에 한해서 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법안만 만들면 다 됩니다. 그 이상은 해결이 안 되겠어요.

○**李熙圭 委員** 이것은 너무 작위적인 법률이 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양당이 또는 나머지 정당의 소위 투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너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구 자체를 없앤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기 전에는 그냥 상정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尹景湜 委員**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교섭단체의 의석수가 많은 그 교섭단체 쪽에서 자기네 쪽 부의장이 사회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저지를 한다 그것은 사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그런 경우에는 국회 경위권이 왜 있습니까? 경위권 발동해서 처리를 하면 되지요.

○**李熙圭 委員** 아니, 그럴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尹景湜 委員**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가정을 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비약이지요.

○**小委員長 千正培**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또 아까 제가 대체로 4시까지 끝내기 위해서…… 이 안건도 오늘 합의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오늘 여야 위원님들의 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이해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일단 계류를 하고 앞의 3항이나 5항처럼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의 입장도 좀더……

○**金鶴松 委員** 일단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양당간에 대표적으로 한 분씩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金鶴松 委員** 저희들 조금 전에 兪成根 위원이나 또 尹景湜 위원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공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李熙圭 소위원도 그렇고 金宅起 위원도 그렇고 저나 다 같이 초선으로 16대 국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저도 바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를 볼 때 국회가 날치기를 하고 또 어떤 몸싸움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볼 때 국민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이것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부분을 저도 16대 국회 들어오면서 정치의 어떤 선진화, 국회의 역할을 위해서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국회법 개정문제는 너무 당에 의한 당론에 따라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좀더 폭넓게 보면서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함께 담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아까 의장의 당적이탈문제와 이

문제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안이 보류가 된다 하더라고 다음에 다룰 때 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특히 金宅起·李熙圭 우리 초선의원들끼리 한번 뜻을 같이 모아봅시다.

○**金宅起 委員** 알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小委員長 千正培**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십시다.

安商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출석요구대상자의 범위에 검찰총장을 포함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입니다.

○**李熙圭 委員**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심지어는 탄핵의 문제까지도 제기가 되고 했었는데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등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요지의 법안인데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그동안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기제까지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검찰총장 문제만큼은 임기제로 못박아 놓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뜻에서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검찰총장에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출석요구의 조건, 요건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지요? 의원 5분의 1만 동의하면 불러낼 수 있지요?

○**小委員長 千正培** 출석요구는 어차피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요?

(「의결을 거쳐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李熙圭 委員** 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요? 결의를 했을 때에는 출석할 수가 있지만 결의를 못하고 다만 발의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일단 사람을 국회에서 나오라 들어가라, 어떤 사안 사안마다 자꾸 그렇게 되면 소위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검찰총장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거의 전반적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터질 때마다 나와라 들어가라 하는 요청이 너무나 잦다보면 본래의 임무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각 당에서 심도있게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연후에,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金武星 委員** 李熙圭 위원님, 그 부분은 검찰이 중립화만 되면 국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오라는 것이지……

○**李熙圭 委員** 중립화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尹景湜 委員** 수석전문위원님, 과거 검찰총장이 출석요구 대상자였던 적이 있었어요?

○**小委員長 千正培**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 초반 당시 신직수 검찰총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검찰총장이 독립적으로 출석한 것은 아니었던 것같고 검찰 예산을 다룰 때 법무부장관이 출석할 때 따라서 배석해서 국회에 나온 예가 몇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십이삼 년경인가 그렇고 그 후로 한 40년 가까이는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국회에 나오는 것이 적절치 않다, 만약에 검찰총장이 출석할 일이 있으면 그것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독기관이고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과거에 지금 여당이 야당을 할 때는 저 자신도 줄기차게 출석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 당시 지금 야당위원님들이 여당을 하실 때는 죽어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가 정권교체에 따라서 여야의 입장이 뒤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兪成根 委員** 전문위원님, 우리 헌정 사상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기간과 사례를 죽 조사해 주시지요.

○**李熙圭 委員** 60년대에 한번 있었고 그것도 단독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같이 따라 나온……

○**兪成根 委員** 그런데 검찰총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지금 국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어떤 특정 정권에만 자꾸 의지를 하는 그런 나약함을 보이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나와 가지고는 잘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립성을 얘기하지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보다 검찰총장이 더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까? 이런 분들도 다 나오는데 검찰총장이 왜 안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감사원장도 나오고 선관위원장도 나오고 대법원장도 나오고……

○**李熙圭 委員** 법무부장관이 나오면 되는 것이지요.

○**兪成根 委員** 법무부장관이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 알권리를 전혀 충족을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尹景湜 委員** 李熙圭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을 출석하라고 그러는 것이 국무위원을 불러다가 압력 넣고 핀잔 주고 그러려는 것이 아니고 국정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알아보기 위해서 출석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대상자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그리고 정부위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특히 검찰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경험이 일천합니다마는 법무부장관에게 물어 가지고는 특정 사안에 대한 질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져 본들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제대로 의문나는 사항이 밝혀지지 않고 답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도 중립일 뿐만 아니라 정말 검찰의 업무에 대해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질의해서 파헤치고 하려면 수사의 총 책임자인 총장을 불러다 물어보지 않고는 검찰의 분야에 관해서 만큼은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니까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출석대상자로 넣어 놓았다가 그렇게 시행해 보고 시정이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또 발생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검찰총장을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武星 委員** 인사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에 출석해야 되나요?

○**尹景湜 委員** 그것과는 달라요.

○**小委員長 千正培** 우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대체로 4시까지 회의를 종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깊이 할 생각은 없고 다만 이 문제는 사실은 수십년 동안 굉장한 토론이 이루어져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오늘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 정도로 계류해 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金鶴松 委員** 소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121조 국무위원의 출석요구 아닙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기 위해서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 감사원장까지도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검찰총장은 이 부분에서 빠져 있는지……

○**小委員長 千正培**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한번 답변해 볼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동안 법사위원이었고 법조인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도 출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사법부라는 것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대법원장 자신도 다른 법관에 대해서 지휘할 권한도 없고 판결내용에 관여할 권한도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법행정상의 문제,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법원의 행정책임자 아닙니까? 사법행정상의 문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출석할 수 있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은 무엇이냐 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의 총 책임자로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중립성의 여부는 차치해 놓고 우선 제대로 돌아간다면 준사법기관으로서 보호되어야 될 자리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국무위원이고 검

찰총장을 최고감독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출석으로써 충분한 것이고 검찰총장이 만약 출석해서 개별적인 수사에 대해서 답변하게 된다면, 아까 尹 위원님의 말씀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모르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국회법의 취지는, 국감조법에 되어 있습니까, 계속 수사 중인 사건에는 국회가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 보아서 현재는 그런 질문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역시 법무부장관이라는 완충역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질의함으로써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이 현행법과 관행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편파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만약 지금 검찰총장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런 나름대로의 검찰의 중립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중립이 안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국회에 불러다가 중립성을 보장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방향이 빗나간 것 아닌가? 오히려 국회에 나옴으로써 검찰의 수사가 정치화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여당에 의해서건, 야당에 의해서건……

그래서 저는 이것은 누가 여당이 되고 정권을 장악하든 간에 역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鶴松 委員**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대신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각 위원회의 각 부 장관과, 예를 들어서 국방부장관이 있으면 그 밑에 참모총장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예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검찰과 법무부관계입니다. 검찰총장은 특수한 직위입니다. 특수하다는 얘기는 검찰총장이 법관은 아니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행정부나, 아까 국방부를 말씀하셨는데 국방부산하의 참모총장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의 검사에 대해서, 검사의 최고검사가 검찰총장 아닙니까?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런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해 준 것 아닌가? 이를테면 우리 국회가 법관을 부른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검찰총장이 완전히 법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준"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금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서 정치적 외풍을 막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현재의 법과 관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金鶴松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金大中 대통령께서 인권향상을 위해서 노벨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인데 인권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에 의한 또 정치적인 중립 이러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신구속되는 수가 일본에 비해서 무려 5배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지난번에 제가 법사위에서 주장한 바입니다.

○**金鶴松 委員** 예, 무려 5배라는 것을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국회에 나와서 여건 야건 국민을 대변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리당략에 매여서 이 문제를 풀이하면 되지 않고 국가개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신구속되는 프로테이지도 떨어뜨려 주어야 되고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떳떳하게 여야의 의견을 듣고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검찰도 중립화되고 더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저는 당리당략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검찰총장은 절대로 국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야의 위치에 관계없이 주장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정치인이 여야가 바뀌어서 말을 바꾸는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야당 때 이것을 너무 일면적으로 보았구나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金武星 委員** 소신이 바뀐 것 아닙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소신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생

각이 바뀐 것이지요.

○**兪成根 委員** 그런데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법행정에 대해서만 국회에 출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서 법원이 그야말로 법원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할 때는 큰 문제입니다. 전 국민이 공분할 정도로 판결을…… 대법원장이 자기의 중립성을 완전히 해치게 되면 대법원장을 불러야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이, 국민들 전체의 마음에 나라가 검찰때문에 망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검찰총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올 시점이 됐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야당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독촉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더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오늘 4시 정도에는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법에 한 5분씩 할애한다고 생각해도 오늘 결론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주장들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일단은 이 정도에서 토론을 마치고 다른 법들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건이 남아 있는데 金龍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대상에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하자는 국회법개정안과 마찬가지의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을 한꺼번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熙圭 委員**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같은 것입니다. 7항하고 11항이 하나는 국회법에 규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인사청문회법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법관을 인사청문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관에 대해서는 국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인사청문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예. 국회법에 누구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조항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국회법 몇 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런데 이 법 두 개를 다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다 고쳐야 됩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법을 다 고치고 그 내용은 동일한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토론을 위해서 제가 쟁점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또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든가 국정원장 등 다른 공무원으로 확장하는 문제는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국회가 관여한다고 되어 있지 않는 공무원의 임명에 관여한다는 점에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주장으로서는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나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하거나 선출한다는 말이 없지만 헌법 조항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국회가 이런 입법을 할 수 있다는 반대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명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熙圭 委員** 이 문제를 다루려면 우선 헌법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하위법에서 다루고 논의를 해봐도 헌법문제가 결정되고 해결되지 않고서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소위에서 5분, 10분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尹景湜 委員** 본 위원은 이것이 헌법 개정사항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李熙圭 委員** 헌법에서 명확하게 뭔가 선을 그어 주어야 되는데 헌법에서 조차도, 심지어는 헌법학자들에 이르기까지도 상당히 의견 자체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尹景湜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법 자체가 국회 선출 또는 동의하는 직에 대해서 청문회 대상으로 하기로 제정했을 뿐이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임명대상자를 인사청문회법 대

상으로 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인사청문회법도 대통령이 공직자를 임명하는 근거법률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정원장이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내용인데, 특히 검찰총장은 아까 국회 출석요구대상자 문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너무나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가 검찰의 독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정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중복적으로 정비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검찰청법도 여러 가지 개정하자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함께 개선되고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에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임명을 대통령이 단독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로 구별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법에서 국정원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서 '국회의 심사를 요하는 국정원장의 임명'이라고 법을 함께 고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법하고 검찰청법을 국회법하고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다 연결되어서 그 법에서 국회의 심사를 받아서 임명한다라고 먼저 정하고, 그렇게 하고 국회는 심사대상인 국정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법이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동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를 함께 해서 세 위원회에서 동시에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특히 정보위원회에 교섭단체대표의원들이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실마리를 푸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대상이 현재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데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검찰총장은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되니까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가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헌법이나 법률체계에서 아주 광범위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공무원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됩니다. 연방법원의 경우 대법관 뿐만 아니라 법관 임명도 모조리 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런 등등의 전체적인 범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법상으로는 국회가 동의하고 선출하는 고위공무원 이외에 확장하는 문제는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검찰총장하고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해서 다른 직위의 공무원,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아예 청문회를 않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등등의 문제들도 아울러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이 정도로 토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남았으니까 앞으로 5분씩만 더 해서 10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시작하면 10분 이내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소위를 하면서 의안을 전부 올려 가지고 전문위원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지 위원장이 '이것은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아닙니다. 위원회 진행은 저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우선 오늘은 전체를 한번 총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했는데 두 개가 남았습니다. 5분씩 해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5분 가지고 합니까?

○**尹景湜 委員** 만약에 5분 정도씩 한다면 이 법안에 대한 무시지요.

○**小委員長 千正培** 여러분들 입장도 알겠지만 오늘 다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것도 해 왔지 않습니까?

○**金武星 委員** 쟁점이 안 되는 것만 하더라도

20분, 30분 걸리는데……

○**尹景湜 委員** 심의를 한 건 한 건 심층적으로 하면 되지, 꼭 열두 건, 열한 건을 한꺼번에 5분씩 스크린하고 끝까지 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이냐?

○**小委員長 千正培** 좋습니다. 우리 尹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운영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은 전체적인 총괄토론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까지 잘 해 왔지 않았습니까?

○**金武星 委員** 4시까지 했잖아요.

○**兪成根 委員**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요. 속기록에 보시면 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대체로 4시지만 이런 시간에 좀 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兪成根 委員** 아니, 저희 의원총회가 있고 총무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곧 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沈在哲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이 부분은 우선 제가 쟁점을 정리해 보면 우리 존경하는 金武星 수석부총무하고 저하고 직접 협상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난 6월입니다.

그때 인사청문회기간을 2일로 합의한 상태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5일 정도로 늘리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리면서 여러 가지 국회처리시한이라든지 한꺼번에 연장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의원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한나라당의 입장을 간단하게 한 분 정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경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小委員長 千正培** 인사청문회기간 연장문제입니다.

金 수석께서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번에 공직후보자인사청문회를 우리가 이틀로 하기로 했는데요.

○**金武星 委員** 이틀로 하기에는 좀 짧았어요.

○**小委員長 千正培** 그때도 당초에 야당이 3일을 주장했고 여당은 아마 1일을 주장했다가 타협을 이틀로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것을 시행한지 오륙 개월 되었는데 이것을 5일까지 길게 할 필요가 있나요?

준비기간 연장 등의 요구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한 사람을 두고 청문회를 5일씩이나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고 더구나 공직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시급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오히려 불편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金武星 委員** 며칠로 해 달라는 것이에요?

○**小委員長 千正培** 이틀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인사청문회는 2003년까지 더 이상은 없지요?

○**金武星 委員** 아니,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 청문회기간이 아니고 준비기간이지요.

○**小委員長 千正培** 청문회기간도 우선 5일로 늘려 놓았습니다.

○**金武星 委員** 그래요?

○**小委員長 千正培** 예.

○**吳長燮 委員**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을 좀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까?

○**金鶴松 委員** 지난번에 우리가 청문회 할 때 보니까 너무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金武星 委員** 그때 여야가 부족하다는 것을 공동으로……

○**小委員長 千正培** 저도 부족하다고 해서 좀 늘려보자고 했습니다.

○**金鶴松 委員** 지금 2일에서 5일까지로 연장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번 조정을 해 가지고 어차피 날짜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비기간을 늘리고, 여기 보니까 서면질의 대상자를 공직후보자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생산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음 인사청문회가 있다고 하면 2003년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 후이기 때문에 당략적인 주장일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李熙圭 委員** 날짜조정은 다시 한번 하지요.

○**小委員長 千正培** 이것은 당에 가서 한번 상의해 본 다음에……

○**金武星 委員** 千 위원도 같은 인사청문회 위원이었잖아요. 그때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小委員長 千正培** 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李熙圭 委員** 여기에 보면 준비기간도 20일에서 40일로 늘려놓았거든요.

○**小委員長 千正培** 활동기간을 12일에서 30일로 늘리자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金鶴松 委員** 그리고 국회처리시한도 어차피 늘려줘야 돼요.

○**小委員長 千正培** 그렇다면 예를 들어 국무총리가 궐위되면 국무총리 후임을 정하는데 한 두 달이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金鶴松 委員** 20일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지금은 20일 이내인데 이것도 기존의 관례에 비하면 상당히 긴 것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점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검토해 보고 당에 가서 의견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남았습니다.

○**金武星 委員** 뭐가 5분 남았다는 거예요? 몇 시까지 5분 남았다는 말이에요?

○**小委員長 千正培** 아까 2개를 5분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鄭均桓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으로 완화하는 등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열 명이 아니면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생산적인 발언을 해주세요.

○**金武星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千正培 수석께서 아주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가지고 그랬더라……

○**兪成根 委員** 국회의장 당적을 뽑아놓을 때는 안 해놓고 지금 당적이 들어가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金武星 委員** 지난번 국회법을 포함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러번의 공청회를 거치고 또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99년8월12일부터 2000년1월1일까지, 현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집권당인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치전반에 대해서, 국회법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었고 그때 충분한 토론을 해 가지고 정한 법입니다. 이 법을 제대로 시행도 안해 보고 몇 달이나 되었다고 지금 와서 바꾼다는 것은 이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安東善 위원장, 林采正 위원장을 비롯한 그 위원들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개정을 원한다면 국회법에 보장되어 있는, 오늘 합의보지 못한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또 다시 개정요인이 있는 부분을 통틀어 가지고 공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動議합니다.

○**兪成根 委員** 재청합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다른 분들은요?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吳長燮 위원, 한 말씀하시지요.

○**吳長燮 委員** 국회법에 대해서는 말문을 열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오늘 국회법에 관련한 모든 법안을 심의, 분석, 토론하면서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토론이 되었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고 또 정당제도라는 현실에서 정당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오늘의 정치현실을 아무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회법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흔히 의원들이 국회 의정단상에서 말씀하시면서 의원 개인 개인 한 분이 '헌법기관이다' 이런 말씀을 쉽게 하십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 미국의 예를 많이 듭니다마는 국회의원 한 분이 어떤 법안을 발의해도 그대로 법안으로 수용되는 민주적인 국가와 비교해서 우리 한국은 법안발의나 모든 것의 규제요건 내지는 여건이 너무도 강화된 입장이고 반면에 헌법에 위헌이라고 할 정도인 정치관계 입법에 대해서 교섭단체 기준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50%를 할애하는 이런 모순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에 해당되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어려운 우리의 정치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민련이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어떤 특정정당의 선거결과에 따라 지금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시의적절함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중병에 걸렸을 적에는 병원에도 가고 시급한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언론상 선거의 결과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말을 못하는, 또 말을 하지 않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의견, 10%라는 국민의 의견, 예를 들어서 생활로 하면 가장 저변층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10%에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수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고 발전적인 정치적 수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양당의 합의 하에 모두에게 발전적인 정치상을 구현한다고 인정될 때 될 것으로 보고 더 이상의 구태의연한 설명이나 제안을 하지 않고 검토보고에서 긍정적인 면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의 내용이 바로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포함해서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金宅起 委員** 저도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민주화의 핵심은 정치참여의 확대인데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얼마나 확대시키느냐의 여부가 민주화를 재는 잣대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독재정권 유지의 가장 큰 전제가 참여의 기회를 제한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정당이든 심지어는 야당까지도 정치참여를 제한시켜 가지고 독재를 유지시켜 왔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당리당략을 떠나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많은 사람을 참여시킨다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제 국회의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교섭단체 의원 수를 구성한다는 것이 당연히 현실적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주화 발전에 부합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리고 공청회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金武星 委員** 金宅起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국회의원 수도 줄었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도 줄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보면 정개특위에 자민련에서 4명이 참여했습니다.

李良熙 의원, 邊雄田 의원, 金基洙 의원, 許南薰 의원, 이 중에 李良熙 의원은 현재 자민련의 원내총무직을 맡고 있는데 이 분들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국회의원 수를 27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 때 원내교섭단체도 줄였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현실적으로 논의가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金武星 委員** 그 부분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小委員長 千正培** 특위에서 교섭단체 수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吳長燮 委員** 정개특에서 그렇게 졸속으로 그 중요한 법안을 다룬 것이 그 때의 현실입니다.

○**金武星 委員** 그것이 왜 졸속입니까?

○**李熙圭 委員** 제가 볼 때도 졸속으로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 뭐냐하면 정당법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당법을 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하느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시간이 있어서 잘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여든 야든 지구당 경비를 대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尹景湜 委員**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심의를 그 당시에 하지 않고 졸속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수석부총무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정치개혁특위에서 졸속으로 했다고 치고 지금에 와서 교섭단체 요건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했을 때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한 분들, 그 원내에 있던 분들은 졸속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졸속으로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정치권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민련에 대해서 총선 민의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한 축을 형성하게끔 지지를

해주어야 되겠다 했으면 20석 이상을 투표했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 졸속이든 어떻든 정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이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행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吳長燮 委員** 20석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법개정을 요구했겠느냐라는 위원님 말씀은 인정하고 인격적인 비판이든 당에 대한 비판이든 감수하겠습니다. 그때 법개정의 잘잘못을 시비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당은 법안발의라든지 그런 요건을 제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두 당이나 국회에 어떤 의사전달을 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면 두 당에서 그동안에 협의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이 법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역설해도 이미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평가받을 것 다 받았고 욕먹을 것 다 먹었습니다.

우리는 두 당이 결정하는 결과에 따라서 존립할 수밖에 없는 당입니다.

이 문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두 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의존하고 거기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총선 민의를 얘기하셨는데 총선 민의는 갈수록 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이외에 자민련의 캐스팅 보트의 역할 또 국회 운영에서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역할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야 간에 협상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공식테이블이 아닌 데에서 자민련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투명화해서 교섭단체대표들 간에 회담이나 접촉을 통해 국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옳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총선 민의에 의한 정치의 안정, 정치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역시 현실적으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청회 이 문제는 사실 16대국회의 원구성이라고 할까…… 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국회 운영의 기본틀을 짜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16대국회 초에 이루어졌어야 할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과연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양당 간에 이미 충분히 파악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청회를 하더라도 이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공청회는 역시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武星 委員** 전체회의에서 하면 되지요.

○**尹景湜 委員** 현실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꼭 성립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역할을 하면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으로 꼭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비밀스럽게 하느니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협상하는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가 아니어도 원내총무도 계시고 총재님도 계시고 대표자님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교섭단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의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섭단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문제에 대해서 사회나 정치권에서 충분히 인식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6월2일 KBS 쟁점토론회에서 전화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교섭단체 하한 주장에 압도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83%가 반대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생각한다면…… 여론

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찬성 쪽으로 몰아가는 전화응답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있어도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의 가능성은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공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당연히 공청회를 새로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吳長燮 委員** 위원장님, 교섭단체에 결부된 법안은 거의 당론의…… 당의 위상이나 당의 현실을 대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더이상 토론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고 단지 지금 교섭단체 총무 총장, 그 말씀은 국민이 현실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수밖에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섭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진까지 못 찍을 정도의 치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총무 대 총무가 만나는 것을 왜 사진 찍지 못합니까? 교섭단체 대표끼리 만나면 전혀 안 된다는 것이……

○**吳長燮 委員** 아니,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치욕을 당했는데 더 이상 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李熙圭 委員**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주주의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나라의 예를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확대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과거의 정치행태가 사실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말에 이르러서 시민단체의 성숙이라든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접근하면서 무슨 문제가 대두되었느냐 하면 민주주의는 공개라고 하는 공개원칙의 확대가 간단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참여의 확대가 민주주의의 신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양적인 것, 숫적인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국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양보다는 질을 논하는 시대가 되었고 양이 줄어들면서 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소수의 보호라는 것이 어찌보면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공개주의가 확대되고 참여가 확대될수록 보이지 않는 소수, 참여 못했던 소수, 잊혀졌던 소수에 대한 발굴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집단에 대한, 그런 그룹에 대한 가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하여튼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이제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함께 간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선단식 경영이라고 해서 재벌이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 갔었는데 산업사회가 끝나는 20세기 말에 이르러 중소기업도 우대하고, 중소기업을 더 우대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분들의 고충과 애로를 자꾸 더 많이 알아내려고 하고 그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주려고 했던 것이 경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을 정치권에서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소기업을 돌아볼 줄도 알고 찾아줄 줄도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시각이 있다면 정치권에서도 소수의 보호라든지 공개주의 원칙의 확대라든지 참여의 확대 이런 등등의 가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민련의 문제, 한나라당의 문제, 민주당의 문제를 각 당의 시각으로 축소시켜서 보는 것보다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같이 맞물려서 좀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한번쯤 돌아보고 한번쯤 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일 때도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鶴松 委員**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아까 국회의원 수당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국민의 뜻을 반영시켜서 국회법을 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KBS에서 자민련 교섭단체문제, 국회법개정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3%

라는 국민이 교섭단체를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여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각 신문의 사설에 제목이 '눈가리고 아옹하는 교섭단체'부터 시작해서 20건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사설을 뽑아보니까 20건입니다. 제가 제목을 다 얘기를 해달라면 얘기하겠습니다. 이 만큼 언론에서도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무리해서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과연 교섭단체 조정문제로 인해서 국회가 파행을 겪는 문제가 생긴다면 또다시 우리 국회가 욕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우리 수석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히 자민련이나 민주당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교섭단체개정안을 하겠다면 국회법 64조에 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 개최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묻겠습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15대 때 없어서 잘 모릅니다마는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15대 총선 이후에 그 당시 구 민주당이 15석을 얻어서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15석으로 줄이자고 제기를 했을 때 당시 민주당과 자민련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7석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교섭단체를 재론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金武星 委員**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교섭단체를 20인에서 10인으로 낮추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토론은 여기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청회를 해서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고 3분의 1이상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이 그렇게 선택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宅起 委員**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국회의원 하나 하나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교섭단체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정치참여를 제한시키는 것이니까요. 교섭단체는 과거 독재정권이 무소속이나 소수야당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기 위해서 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섭단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참여를 제한시키지 않고 확대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수는 줄여야 합니다. 아까 金鶴松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정치신인으로서 정도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교섭단체 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단지 공청회문제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를 봐야지만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로 민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청회안은 찬성을 하고 단지 그것이 여기서보다는 전체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李熙圭 委員** 저는 양당 간사가 계시고 소위원장도 계시는데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金鶴松 위원님께서 과거 여론조사 또 신문의 사설 등을 보면 거의 반대하는 쪽이 많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이든 TV이든 신문이든 간에 양당의 논리 만이 주로 많이 언급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소수인 자민련 입장에서의 의견개진이나 자당의 논리를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축소되었거나 기회가 적었거나 등등 그랬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왜? 언론에서도 일단 취급해 주는 것이 거대양당에 대한 의견들을 주로 많이 다루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자민련의 입장에서의 여론을 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기회는 부여받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민련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자민련 입장의 대국민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吳長燮 委員** 제가 한 말씀 할까요?

○**小委員長 千正培** 예.

○**吳長燮 委員** 지금 언론보도, 내용, 결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자민련의 현실이 그런

상태입니다. 객관적으로 언론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보도하느냐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민련이 총선 이후에 자민련의 정책이라든지 국회에서 외교적 활동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두 당과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투명성을 가질 수 있겠끔 보도로서의 역할을 해주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문제에 있어서 金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토론회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 말씀을 올리고 이 자리가 실질적으로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토론회 내지는 이런 관계를 결정하는 자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金鶴松 委員** 그것은 공청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吳長燮 委員** 공청회를 여기서 결정할 사항인지 이해가 안 가고 반대입장을 표하면서 지금 말씀드렸 듯이 이 법안관계는 두 당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본 위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찬성의 뜻을 밝혔 듯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소한도 한 사람의 의견, 헌법기관을 자칭하는, 국회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회가 올 적에 정당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국회가 된다, 반면에 모순이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교섭단체 기준에 대해서 50%를 할애해 놓은 다음에 할당한다는 것도 국회의 다수당 내지는 다수의 횡포라고 볼 수 있고 형평의 원칙 내지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을 다 16대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이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했고 15대에서 졸속처리했던 이런 법은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기피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16대에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역할은 두 당에 의해서 결정되고 저희는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것이 자민련의 입장이고, 저희가 아쉽고 서글픈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소위원회에

저희를 참여시켜 주었다는 것 자체로 고마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金鶴松 委員**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개최토록 국회법상 지난번 15대국회에서 고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면 공청회는 당연히 개최되는 것이지요.

○**金武星 委員** 吳長燮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순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정치개혁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거기로 넘겨서 제대로 다루지요. 이것 뿐만 아니라 정당법 문제라든지 선거법 문제라든지 같이 다루어가지고……

○**吳長燮 委員** 그 관계도 양당간에 협의할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양당간에 알아서 하십시오.

○**小委員長 千正培**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공청회를 한다면 어떤 차원에서 할 것인가, 소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정치개혁특위로 넘길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는 자민련을 포함해서 3당이 다 모여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간사들끼리 협의하고 대표의원들끼리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회법이 한꺼번에 단일법에 대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의안에 대해서는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했지만 여러 개 중 그것 하나만 그대로 보고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수당에 관한 법률은 법 자체가 구별되기 때문에 소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이것만은 오늘 소위에서 의결된 것을 분리해서 전체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